

第93回서울特別市議會(臨時會)

文化教育委員會會議錄

第 4 號

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

日 時：1997年3月25日(火) 午後2時

場 所：文化教育委員會會議室

議事日程

1. 서울特別市名譽市民證授與條例中改正條例案審查의件
2. 文化局所管懸案業務報告의件

審査된案件

1. 서울特別市名譽市民證授與條例中改正條例案審查의件(서울特別市長 提出)..... 1面
2. 文化局所管懸案業務報告의件..... 4面

(14時 08分 開議)

○委員長 劉大運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特別市議會 臨時會 제4차 文化教育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.

(議事棒 3打)

1. 서울特別市名譽市民證授與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의件(서울特別市長 提出)

○委員長 劉大運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名譽市民證授與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의 件을 상정합니다.

(議事棒 3打)

먼저 文化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文化局長 李相鎭 존경하는 劉大運 委員長님,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, 오늘 文化教育委員會에 상정된 서울特別市名譽市民證授與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.

서울特別市 명예시민증 수여와 관련된 목적 조항에서 수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메달 서식을 새로이 제정된 서울의 상징마크 양식으로 개정해서 시행규칙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개정의 필요성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현 조례는 명예시민증 수여의 대상이 서울特別市를 방문하는 귀빈에게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시정발전에 공헌한 서울거주 외국인 및 서울

特別市の 위상제고에 기여한 외국도시의 인사에게는 명예시민증 수여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의 공로가 현저하거나 서울特別市를 방문하는 귀빈에게로 수여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또한 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된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메달에 관한 서식은 서울市 상징마크가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 우리 市 국제교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번에 상정된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이상입니다.

○委員長 劉大運 文化局長 수고하셨습니다.

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專門委員 金宗植 專門委員 金宗植입니다.

서울特別市名譽市民證授與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(報告)

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본 개정조례안은 1996.11.18.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.11.20.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사유

<p>명예시민증 수여목적을 명확히 하고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메달 제작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골자</p> <p>가. 명예시민증 수여와 관련한 목적을 명확히 함</p> <p>나.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메달 제작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하게 함.</p> <p>4. 근거법령</p> <p>지방자치법 제15조(조례)</p> <p>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</p> <p>5. 검토의견</p> <p>○본조례안은 1973년부터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귀빈들에게 수여하였던 명예시민증의 수여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의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메달 서식을 새로이 제정된 서울의 상징마크로 개정하여 별지서식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</p> <p>○본조례 제1항(목적)에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인 “우리 시를 방문하는 귀빈에게”로 한정되어 있어 시정 발전에 공헌한 국내 거주외국인이나 외국도시의 귀빈에게는 명예시민증 수여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“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귀빈에게로”개정코자 하는 것이며</p> <p>○또한 조례 제3조2항의 별지 제1호서식(명예시민증) 제2호서식(명예시민메달) 중 서울시의 상징마크가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함입니다.</p> <p>○따라서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메달 수여범위를 확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세계화와 국제교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적절하다 할 것이며</p> <p>○또한 명예시민증과 명예시민메달의 양식(형식)과 규격 등을 조례에서 정하므로써 시대변화 및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</p>	<p>대처하기 어렵고 서울시 상징마크가 새로이 제정되어 교체된 서울시의 상징마크를 수정하여야 하는 등 조례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명예시민증과 시민메달의 양식(형식)과 규격을 규정하는 별지서식을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사회변화와 국제교류의 여건에 탈력적으로 대처하도록 위임하는 본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</p> <p>.....</p> <p>이상으로 서울特別市名譽市民證授與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</p> <p>○委員長 劉大運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. 질의와 답변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? (「없습니다」하는 위원 있음)</p> <p>의의가 없으므로 회의진행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.</p> <p>본 改正條例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참고로 본 改正條例案은 조금 의미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사전에 배포해 드린 조례 내용을 많이 검토를 하셨으리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.</p> <p>朴贊國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朴贊國委員 朴贊國委員입니다.</p> <p>현 우리委員長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委員은 사료됩니다.</p> <p>다만, 한 가지 우리 文化局長께 부탁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서울시 일원에 약한 40여 國에서 韓國에 일단 거주하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. 그런데 자매결연을 맺는 國家는 약 15개 국 정도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.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우리가 세계화를 추진하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것을 文化局長께서 연구하셔서 앞으로 대폭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떤 국가간의 교류, 서울시간의 어떠한 국제도시화의 교류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</p> <p>이상입니다.</p> <p>○委員長 劉大運 다음 질의해 주실 委員님, 張精一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-	--